

## 아동상담사의 양성과 국가자격검정제도 안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for Training Child Counselors and Integrating Such Training into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이희선(Heesun Lee)<sup>1)</sup>

조성연(Songyon Cho)<sup>2)</sup>

심미경(Mi-Kyung Sim)<sup>3)</sup>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public policy issues related to child counselors, with a special focus on training programs and integrating such training into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The number of children manifesting variou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al problems have increased recently. Thus, there is a clear and growing need for suitably qualified specialists to help them and their parents. Child counselors (CCs) are qualified specialists in child counseling and therapy. However, there are no national qualifications or training systems for CC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Korean national qualifi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CCs by comparing the Korean Youth counselor's qualification, training and in-service training system, and with those of both Germany and the USA.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inclusion of a practicum component and a suitable in-service training system for Korean CCs.

**Key Words** : 아동상담사(Child counselors), 청소년상담사(Youth counselors), 국가자격검정제도(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아동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sup>1)</sup>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sup>2)</sup>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sup>3)</sup>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ngyon Cho,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 Anso-dong, Cheonan-si, Chungnam province 330-713, Korea  
E-mail : sycho@hoseo.edu

## I. 아동상담사와 이의 국가자격검정제도화의 필요성

급속한 변화로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성인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역시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의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구조의 가정이 생겨나면서 가정 내에서 심리적 안정과 발달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부모의 과잉기대와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는 아동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동들은 이른 시기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초등학교의 정신건강 선별검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26.2%가 인터넷 중독현상을 보이고, 20.6%는 정서문제, 20.3%는 학습장애, 11.6%는 행동문제를 보이는 등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78.7%가 각종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9~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8천여 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약 12%인 867천여 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조선일보, 2010. 3. 30).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2007)의 행정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06년도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19만4,421명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7. 10. 28).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아동학대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 9,478건이 신고 되

어 2006년에 비해 6.5% 증가했고, 학대아동 보호건수도 5,581건으로 7.3%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아동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심각한 심리적 위기 상태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정신건강을 도모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아동상담 현황에 의하면 비행·부랑아 선도 상담은 2001년 1,841명에서 2005년 4,158명으로 2.3배 증가하였으며, 아동의 심리·정서장애 상담이 2001년 6,576명에서 2005년 10,577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문제가 있는 아동의 현실 적응과 미래 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아동상담이 필요하며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아동상담을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즉 전문 아동상담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를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조기치료 시스템이 부재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동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에는 조기 예방시스템을 갖춰 발달장애아동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18.2%(1995년) → 17.4%(2000년) → 16.4%(2005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동안 오히려 계속 증가(13.0%(1995년) → 14.4%(2000년) → 16.7%(2005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세계일보, 2007. 10. 30).

이러한 아동상담사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으로 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4~2008년 초· 중· 고교생 자살 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초· 중· 고교생의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가 28.4%로 가장 높지만, ‘염세 비판’(19.6%), ‘학업 스트레스’(10.1%), ‘이성문제’(7.2%)가 뒤를 이었다. 또한 자살 원인별 증가 폭은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커서 이로 인한 자살이 2004년 4명에서 2008년 17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자살 충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살 충동 원인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자살 충동 원인은 성적 및 진학문제(51%)가 가장 높았고, ‘외로움’(13.6%), ‘가정 불화’(10.4%)의 순으로 조사됐다(세계일보, 2009. 11. 1). 뿐만 아니라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70개 초등학교 1·4학년, 중· 고교 1학년의 12만6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 학생건강검진 선별검사보고서’에 따르면 2만1497명(17.5%)이 정신건강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12.9%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학교급별로는 중· 고교생이 각각 17.8%, 17.6%로 나타났고, 초등생도 15.6%로 드러나 거의 모든 청소년기에 이러한 정서· 행동 문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청소년의 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7세 이후부터는 성인 우울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발률이 60~70%에 이르며,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세계일보, 2009. 11. 1). 그러므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

는 아동상담사는 매우 필요하다.

아동상담사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요보호 아동, 위기에 처한 아동,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의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비해 영유아를 포함하는 아동기는 발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성인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적절한 상담기법의 훈련을 통한 전문 아동상담사가 필요하다. 이미 국내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가 있어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으나 청소년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상담전문가들이나 발달심리학자들은 상담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의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 모두 발달과정 상에 있기 때문에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시기별 발달과정이나 그에 따른 주요 정신장애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윤치연, 2003).

일반적으로 각 발달단계별로 영유아, 아동이 나타내는 발달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영아기(0~12개월)는 부모와의 애착과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감각상실, 발달지체 등의 문제를 보이고, 걸음마기(13~36개월)는 자율성과 자기통제를 습득하는 시기로서 수면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 유아기(37개월~6세)는 성역할을 습득하고 초아가 형성되는 등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불

안, 공포증, 공격적 행동 등의 문제를 보이며, 아동기(7-12세)는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의 형성, 집단정체성 등을 형성하는 시기로서 열등감, 학습장애, ADHD, 품행장애 등의 문제를 보인다. 청소년기(13-18세)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로서 성격체감이 형성되고 독립심과 자율성이 강해져 성격장애나 비행, 약물남용, 자살시도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발달상의 특징으로 인한 다른 차원의 문제들로 인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상담내용과 방법은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만 한다. 특히 아동상담은 사고력과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의 상담과 차별화되어야만 한다.

아동은 언어적 능력과 기술의 발달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우며, 인지적으로도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 상담을 하게 되면 쉽게 지루해 하고 상담 자체를 힘들어한다. 따라서 아동상담은 언어를 주요 매개체로 활용하는 청소년상담과 달리 놀이, 미술, 모래, 동작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와 활동을 도입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상담자 136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치료유형을 조사한 결과, 놀이치료가 99명(72.8%)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치료 21명(15.4%), 언어상담 16명(11.8%)의 순이었다(유재령·김광웅, 2008).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할 경우에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 매체와 활동을 도입하는 치료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은 정부 주도

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반영된 바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인터넷중독 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해 오다가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200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는데 이는 나이에 따라 인지능력과 행동특성이 다르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도 달라야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생애주기별 상담과정은 유치원생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뉘어 특화되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상담은 각 발달단계별로 다른 문제를 지니며, 그 접근방법이나 해결방법도 달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도 그 자격시험의 응시과목이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즉,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시험과목과 그 내용은 비행, 성, 약물, 위기상담, 진로, 집단, 학업, 가족상담,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 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과 주요 정신장애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이나 주요 정신장애 등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상담프로그램이나 자격제도 등을 통해 볼 때 아동상담은 청소년상담과 구별되어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만 하고, 그 자격제도도 차별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현대와 같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의 정비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과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아동상담을 위한 전문가양성의 필요성을

간과하면서 청소년상담사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아동상담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무관심은 결국 학술단체나 기관의 자체적인 자격기준에 의한 아동상담사의 양성을 유도하여 아동상담사의 통일된 자격검증을 어렵게 한다.

그에 따라 현재 아동상담사의 양성은 다양한 상담관련 학회와 기관 등에서 다양한 명칭과 교육과정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국에는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전문성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적인 아동상담소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자격기준의 제시와 수준높은 아동상담사의 배출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정민정·이상희, 2006).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청소년상담과 연계되어 생애주기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유재령과 김광웅(2008), 천혜숙(2008)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상담은 각 지역복지시설, 각 대학 부설기관, 소아정신과, 사설 아동상담센터,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아동상담사는 사설 아동상담센터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 부모들은 1회에 5~10만원의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이마저 지역 내에 충분하지 않아서 치료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상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수준도 낮아 비용이 저렴한 상담기관이 있다할지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방관하여 이들 기관을 활발하게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혼, 학

대 등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에서 상담을 요하는 아동의 발생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은 오히려 청소년상담보다 국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관리과(보건복지부, 2007)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 현재 피학대아동에게 제공된 전체 상담건수 중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등 전문상담서비스가 10.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학대아동들이 다양한 국가지원 기관(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복지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변화된 현상황에서 여전히 요보호아동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아동상담서비스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상담사의 국가적 자격제도의 정비와 실시는 결국 일반 아동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해줌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아동상담관련 자격검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적인 아동상담사의 법률적 지위형성을 위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아동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자격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을 통해 국내 아동상담사 양성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의 청소년상담사와 독일과 미국의 상담분야 자격검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아동상담사의 국가자격검정제도 안을 제시하고 향후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아동관련 상담사와 치료사들의 자격을 국가적 수준에서 정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아동상담사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의 자격제도

### 1. 국내

#### 1) 청소년상담사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제3조 제7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2003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자

격검정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이다. 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청소년기본법개정 2010. 1. 18).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지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이상의 의무연수를 실시하며(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자격을 갖춘 자는 지역청소년상담지원(육성)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시설에서 활동한다. 이후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정한 시간의 보수교육을

<표 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연혁

년도	주요 내용
1991	◆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자격검정의 기본적 틀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청소년기본법 제정 : 12월 31일
1993	◆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으로 개원
1994	◆ 청소년상담 인력개발 정책연구 수행
1996	◆ 청소년상담원 양성 및 자격검정 시행안 마련
1998	◆ 청소년상담학 세미나 『청소년상담인력 양성체제의 방향』 개최
1999	◆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자격검정 공청회 개최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범
2000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시행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1	◆ 청소년기본법 개정 : 12월 31일
2002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8월 24일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 7월 24일
2003	◆ 제1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실시 : 4월 27일(필기), 5월 25일(면접) ◆ 제1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실시 : 7월 7일~10월 2일

<표 1> 계속

년도	주요 내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실시 : 4월 18일(필기), 5월 16일(면접)</li> <li>◆ 제2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실시 : 6월 26일~9월 20일</li> <li>◆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발전방안 2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연수발전방안</li> <li>◆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발전방안 1 : 청소년상담사 일자리 창출</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실시 : 4월 17일(필기), 5월 15일(면접)</li> <li>◆ 제3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실시 : 6월 27일~10월 13일</li> <li>◆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 4월 27일</li> <li>◆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3월31일)      • 시행일(2006년 4월 01일)</li> <li>◆ 학교청소년상담사 시범운영</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실시 : 4월 23일(필기), 5월 21일(면접)</li> <li>◆ 제4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실시 : 6월 26일~9월 20일</li> <li>◆ 학교청소년상담사 시범운영</li> <li>◆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실시 : 4월 1일~6월 23일</li> <li>◆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수급 활성화 방안 연구 : 현황 및 대책</li> <li>◆ 학교상담의 실제 워크숍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보수교육</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실시 : 4월 22일(필기), 5월 20일(면접)</li> <li>◆ 제5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실시 : 7월 02일~10월 26일</li> <li>◆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 2007. 3. 28~3.30 / 11.19~11.21.</li> <li>◆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수급 활성화 방안연구 : 군상담사 중심으로 ‘군상담의 필요성과 상담자 활용방안’ 콜로키움 개최 : 2007. 11. 23.</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실시 : 4월 27일(필기), 5월 25일(면접)</li> <li>◆ 제6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실시 : 7월 7일~10월 31일</li> <li>◆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 : 2월 28~29일 / 7월 31일 8월 1일</li> <li>◆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실시 : 11월 1일~11월 28일</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실시 : 4월 26일(필기), 5월 24일(면접)</li> <li>◆ 제7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실시 : 2월, 7월~10월</li> </ul>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제도 연혁([http://www.youthcounselor.or.kr/guid/guid\\_01\\_03.html?menuCode=1](http://www.youthcounselor.or.kr/guid/guid_01_03.html?menuCode=1)).

받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3등급(1, 2, 3급)으로 등급화되어 있으며(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2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및 일정 시간의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다. 현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자격증 교부 및 연수도 동 기관에서 행하고 있다.

(1)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제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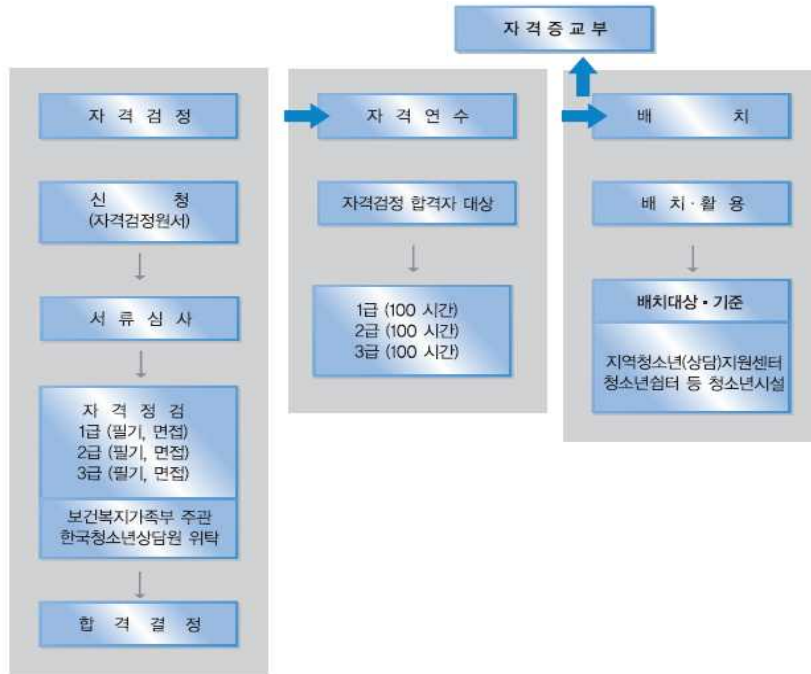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 1회 국가자격검정을 시작으로 2009년 말 현재까지 7회에 걸쳐 국가자격검정을 실시하였다.

(2) 양성체제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체제는 다음과 같다.

(3) 자격검정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기



<그림 1> 청소년상담사 양성체제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p.403.

준은 <표 2>와 같다(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youthcounselor.or.kr/exam/exam\\_main.html?menuCode=3](http://www.youthcounselor.or.kr/exam/exam_main.html?menuCode=3)).

(4) 자격검정과목과 방법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과목과 방법은 <표 3>과 같다(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youthcounselor.or.kr/exam/exam\\_main.html?menuCode=3](http://www.youthcounselor.or.kr/exam/exam_main.html?menuCode=3))

<표 2>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 23조 제2항 별표3)

등급	응 시 자 격 수 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표 2> 계속

등급	응 시 자 격 수 준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 후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받은 자 7.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5) 자격연수과목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연수과목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 24조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p.405).

(6) 보수교육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이후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유지 및 관리,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함양 및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 표4)

등급	검 정 과 목		검정 방법	
	구분	과 목		
1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li> <li>·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li> <li>·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li> <li>·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li> <li>· 이상심리</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심리</li> <li>· 집단상담의 기초</li> <li>· 심리측정 및 평가</li> <li>· 상담이론</li> <li>· 학습이론</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출처> [http://www.youthcounselor.or.kr/exam/exam\\_main.html?menuCode=3](http://www.youthcounselor.or.kr/exam/exam_main.html?menuCode=3)

<표 4> 청소년상담의 자격연수과목

등급	연수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수퍼비전</li> <li>• 청소년위기개입Ⅱ</li> <li>• 청소년관련법과 정책</li> </ul>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li> <li>• 청소년위기개입Ⅰ</li> <li>• 부모상담</li> </ul>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개인상담</li> <li>• 청소년매체상담</li> <li>• 청소년발달문제</li> </ul>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2007년부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하였고, 향후 이의 의무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p.406). 지금까지 실시된 보수교육은 2008년 현재 386명에게 실시되었으며, 이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년도	1급	2급	3급	계
2007년	5	52	78	135
2008년	16	74	161	251
계	21	126	239	386

(7) 배출 현황

한국청소년상담원(2008)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사의 배출현황은 2008년 현재 1급은 227명, 2급은 1,096명, 3급은 1,490명으로 총 2,813명이며, 이의 연도별 현황은 <표 6>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p.405).

(8) 청소년상담사 활동분야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index.html>)).

<표 6> 연도별 청소년상담사 배출 현황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8	99	22	271	37	247	684
2004	4	17	6	84	11	92	214
2005	5	16	21	150	19	132	343
2006	6	24	17	154	10	196	407
2007	0	1	11	166	17	279	474
2008	6	41	23	171	39	411	691
계	29	198	100	996	133	1,357	2,813

<표 7> 청소년상담사 활동분야

국가차원	교육차원	사회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청소년상담원</li> <li>•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li> <li>•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li> <li>• 경찰청·법무부 등 청소년 지원부서</li> <li>• 군기본권전문상담관</li> <li>• 사회복지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청소년상담사</li> <li>•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li> <li>• 대학의 학생상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관</li> <li>• 청소년문화관</li> <li>• 청소년쉼터</li> <li>• 청소년관련 복지시설</li> <li>• 시설청소년상담실</li> <li>• 아동·청소년 대상 병원</li> <li>•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li> <li>•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li> </ul>

(9)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제46조2에 따른 기관인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기준은 <표 8>과 같다.

2) 학회 차원의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외에 국내 아동상담사 자격은 각 대학과 학회 및 사설단체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그중 아동상담사는 한국아동학회의 ‘아동상담사’가 유일하다. 그외 아동상담사 관련 자격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의 아동심리치료사, 한국 발달심리학회의 발달심리사, 한국놀이치료학회의 놀이치료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아동학회

1997년부터 아동발달전문가를 배출한 이후 2000년부터 아동상담전문가, 아동상담사 1급, 아동상담사 2급을 배출하고 있다.

(2) 한국상담학회 산하 아동청소년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상담사자격증을 주고 있으나 아직 아동청소년상담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회 중심의 상담훈련과 연수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수여를 준비하고 있다.

<표 8> 청소년상담사 배치 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기관	1급 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 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을 두고,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2급 청소년상담사 또는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3)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1998년부터 아동심리치료전문가, 아동심리치료사, 아동심리치료 교육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4) 한국놀이치료학회

1998년부터 놀이치료전문가,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수련자, 놀이치료교육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5) 한국 Art & Play 치료학회

Art & Play 3급 치료사, Art & Play 2급 치료사, Art & Play 1급 치료사, Art & Play 치료전문가(슈퍼바이저 겸직)의 자격등급을 갖추고 있다.

(6)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2004년부터 모래놀이치료 지도감독전문가,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모래놀이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7)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998년부터 놀이치료지도감독전문가, 놀이치료전문가, 놀이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8) 대학 차원의 자격증 발급

①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놀이치료사 3급 자격증
- 성민전문학교 : 놀이치료사 자격증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놀이치료사 1, 2급 자격증 발급 등 다수
- 서울스포츠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아동심리상담사 2급, 미술치료사 2급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아동상담사 2급
- 성민전문학교 : 유아심리학과 자격증

② 아동상담 관련 자격 부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나사렛대학교 재활심리학과,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등에서 자격증은 주지 않으나 관련 기관에서 아동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상담관련 전공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자격 부여

(9)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사설 기관에서 전문대졸 이상 또는 사회복지상담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에게 미술치료사 2급, 가족치료사 2급, 놀이치료사 2급, 음악치료사, 독서치료사치료사 등의 명칭으로 자격 부여

2. 국외 : 독일과 미국

1) 독일

“아동-청소년 상담사”로 번역되는 ‘Kinder-und Jugendberater(in)’은 21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자로서 아동과 청소년과 (또는) 이들의 부모 및 보호자/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상담은 가족상담, 법률상담, 위기중재의 학습상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상담은 ‘심리치료사’ 직업과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직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1998년 6월 16일 제정되어 2007년 12월 2일 변경된 심리치료사법령(PsychThG)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일제로 3년 이상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반일제로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가 공인 치료사가 되며, 21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나 대학교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심리학을 전공(임상심리학 포함)하여 졸업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럽공동체(EU) 나라 중에서 대학에서의 심리학(임상심리학 포함) 전공에 상당하는 심리학전공 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른 나라 대학에서 심리학전공으로 위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다.

둘째, 국립대학교나 국가가 인정한 대학에서 교육학이나 사회교육학(사회복지학과 포함) 전공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셋째, 유럽연합(EU) 국가 혹은 독일과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교육학이나 사회교육학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넷째, 다른 나라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대학에서 받은 자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는 21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장애와 정신·신체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진단, 치유 혹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병원, 정신지체시설, 정신과 클리닉, 대학교와 상담실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 2) 미국

미국에서의 상담은 정부차원의 개업을 할 수 있는 면허자격증(licensure)과 비정부차원의 인증을 받는 자격증(certification)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법적인 제제를 받지만 후자는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다. 재활교육위원회(Commission on Rehabilitation Education : CORE), 상담관련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위원회(Commission on the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 CACREP), 혹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PA)와 같은 기관들은 상담이나 심리학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대학교에 대해 재할상담, 전문상담과 상담심리학의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인증(accreditation)을 실시한다([http : //www.counseling.org/Counselors/LicensureAndCert.aspx](http://www.counseling.org/Counselors/LicensureAndCert.aspx)).

미국 내에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상담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국가시험(National Counselor Examination for Licensure and Certification : NCE)에 합격해야만 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슈퍼비전(supervision), 즉 전문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이후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에 대한 훈련과 교육 및 자격시험 등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PA)의 상담심리학회 분과(Society of Counseling Psychology), 전미자격상담사협회(National Board for Certified Counselors : NBCC), 미국상담사협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ACA) 등에서 담당하여 실시한다([http : //www.nbcc.org/certifications](http://www.nbcc.org/certifications)).

미국의 상담사는 임상정신건강상담사(Certified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or), 전미학교상담사(National Certified School Counselor), 전미진로지도상담사(National Certified Career Counselor), 전미노인상담사(National Certified Gerontological Counselor), 중독문제상담사(Master Addictions Counselor) 등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전문분야에 따라 상담사를 분류함으로써 아동상담사 혹은 청소년상담사와 같이 연령과 관련하여 명명하는 상담사의 명칭구분은 없다.

상담사의 자격기준은 국가자격(National Certification)과 주마다 다른 주자격(a State License)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자격은 전문상담의 일반적

이고 특수한 분야에 대한 상담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상담사에게 부여하는 국가 최고의 전문 상담자격증이다. 반면, 주자격은 주마다 다르며 특정주에서만 상담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공인 전문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 : LPC), 공인진로지도전문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areer Counselors : LPCC), 공인정신건강 전문상담사(Licensed Mental Health Counselors : LMHC, 혹은 LPCMH, LCMHC, LPC-MH) 등이 있다. 모든 상담사의 앞의 “L(licensed)”은 공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각 주마다 다양한 상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일례로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공인전문상담사협회(North Carolina Board for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에서 제시하는 공인전문상담사의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다(<http://lpcanc.org>). 공인된 대학과 대학교에서 최소 48 학점을 이수한 석사학위소지자거나 실제로 관련 분야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학위소지자, 혹은 상담분야 석사학위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전문영역에서 협회가 제시하는 2,00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은 상담훈련과 함께 2년 이상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 후(post-Master) 상담경험이 있어야 한다. 슈퍼비전을 받는 상담은 개별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을 최소 100시간 이상 받아야만 하고, 집단상담이 전체 슈퍼비전 받은 상담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상담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최소한 상담 경험이 5년 이상인 공인된 전문상담사여야 한다.

미국 내의 면허나 자격취득 상담사는 매 5년마다 연속 10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정 영역의 상담사들(학교상담사, 임상정신건강상담사, 중독문제상담사)은 100시간의 연수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 2009년부터 아이오와(Iowa)

주, 메인(Maine)주 등 미국 내의 많은 주들은 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을 60시간으로 늘리고, 슈퍼비전을 받는 시간도 늘리는 추세이다.

### III 아동상담사 국가자격검정제도 안

#### 1. 아동상담사의 자격등급과 직무내용

아동상담사의 자격등급은 교육배경(학위 수준)과 현장 실무경력 등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 간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상위등급은 하위등급의 사례감독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하위등급은 이러한 지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아동상담사와 청소년상담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의 아동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등급에 상응하는 등급별 직무내용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아동상담사의 직무내용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첫째, 1급 아동상담사는 문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과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및 2급과 3급 아동상담사의 교육과 사례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2급 아동상담사는 전문성을 갖고 아동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시 지역사회자원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의 환경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1급 아동상담사의 연구과정을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표 9> 아동상담사의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	직무내용
1급 아동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상담관련 기관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li> <li>• 아동상담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li> <li>• 아동상담사의 채용과 관리</li> <li>• 2급과 3급 아동상담사의 교육과 사례감독</li> </ul>
2급 아동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의 진단과 치료적 서비스 제공</li> <li>• 문제 아동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li> <li>• 문제 아동의 원활한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li> <li>• 아동상담관련 업무의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협조</li> </ul>
3급 아동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의 진단과 평가</li> <li>•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회기별 목표 수립</li> <li>• 상담·치료를 통한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문제 완화</li> <li>• 문제 아동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li> </ul>

셋째, 3급 아동상담사는 상위등급의 지도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아동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문제 아동의 진단과 평가에 참여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통해 향후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 2. 아동상담사의 등급별 응시 자격

아동상담사의 직무내용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등급별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상담사의 등급별 응시 자격은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0> 아동상담사의 등급별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1급 아동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아동관련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대학원에서 아동관련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li> <li>3. 2급 아동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li> </ol>
2급 아동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아동관련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대학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아동관련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3. 3급 아동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li>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li> </ol>
3급 아동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아동관련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아동관련학이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li>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li> </ol>

1급과 2급 아동상담사는 1급과 2급 청소년상담사와 크게 다른 교육적 배경이나 실무능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3급 아동상담사의 경우에는 3급 청소년상담사보다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와 달리 독특한 발달적 특징을 지니면서 언어적 능력이 미발달되어 있고, 주의집중력도 낮은 어린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상담사의 확산을 통해 보다 활발한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동상담사는 전문적인 매체의 활용과 심도 있는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학사의 이론적인 지식과 교육기간만으로는 이를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급 청소년상담사는 전문학사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동상담사는 전문학사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 3. 아동상담사의 자격시험 절차

아동상담사의 자격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서류전형을 통해 응시가능자를 선별한 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후 수련과정과 보수교육을 거치도록 하였다. 서류전형은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선별하여 필기시험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2개월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필기시험은 아동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이론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4과목의 필수과목과 1과목 혹은 2과목의 선택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아동상담사로서 지녀야 하는 인품과 윤리적 측면 및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 2> 아동상담사 자격시험 절차

기본적인 상담과 치료기법에 대해 전문상담사들이 구두로 질문하여 평가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자는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아동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아동상담사의 자격 취득 이후에는 매년 혹은 격년제로 등급별로 차등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아동상담사의 등급별 필기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아동상담사의 필기시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한다. 필수과목은 아동상담사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선택과목은 다양한 아동상담기법이나 활용 가능한 치료적 매체들 중에서 자신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여 그에 관한 이론적 지식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등급별 직무내용에 기초하여 과목을 선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각 등급별 필기시험 과목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1급 아동상담사는 2급과 3급 아동상담사를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능력과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을 선정하였다. 2급 아동상담사는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을



<표 11> 등급별 아동상담사 필기시험 과목

등 급	검 정 과 목	
	필수	과 목
1급 아동상담사 (6과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운영 및 관리</li> <li>▪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li> <li>▪ 아동심리치료</li> <li>▪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행정</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심리, 발달정신병리, 임상심리 중 2과목</li> </ul>
2급 아동상담사 (6과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심리측정 및 평가의 활용</li> <li>▪ 부모교육 및 상담</li> <li>▪ 연구방법</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상담, 치료놀이, 인지행동치료 중 2과목</li> </ul>
3급 아동상담사 (6과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심리</li> <li>▪ 아동문제행동</li> <li>▪ 부모교육</li> <li>▪ 아동상담의 기초</li> <li>▪ 심리측정 및 평가</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중 1과목</li> </ul>

선정하였다. 3급 아동상담사는 상위 등급의 아동상담사의 관리 하에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을 선정하였다. 필기시험의 합격은 등급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5. 아동상담사 면접 평가기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전문상담사가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필기시험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 구두로 질문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동상담사로서의 윤리적인 측면과 성품 및 전문적인 자질을 평가한다. 면접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첫째,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아동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셋째, 아동상담사로서의 가치관과 직업의식  
넷째, 아동상담사로서의 긍정적인 성격

### 6. 아동상담사의 수련과정과 보수교육

#### 1) 아동상담사의 수련과정

아동상담사의 수련과정은 아동상담사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수련과정은 아동상담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등급별로 차별화한다. 아동상담사가 아무리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었다할지라도 각각의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상담기법이나 치료기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활발한 상담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과

<표 12> 등급별 아동상담사 수련과정

수련과정	1급 아동상담사	2급 아동상담사	3급 아동상담사
상담현장실습	1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상담수련감독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개인상담사례 공개발표	2사례	2사례	1사례
개인상담사례 공개발표 참가	2사례	3사례	4사례

정으로서의 수련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최종적인 아동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수련과정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전문 슈퍼바이저의 감독 하에 실제 상담사례를 수행하는 상담현장실습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접해보도록 한다. 둘째, 다른 아동상담사의 사례관리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공개사례발표회에 참가한다. 셋째, 본인 스스로 수행한 상담사례에 대한 공개발표를 통해 다른 전문상담사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받는다. 등급별 수련과정의 필수 이수시간과 공개발표회수 및 공개발표 참가회수는 <표 12>와 같다.

2) 아동상담사 보수교육

필기시험과 면접, 수련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동상담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새롭게 발표되는 다양한 상담과 심리치료기법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아동상담사들이 간접적으로 다양한 문제행동 사례들을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3급 아동상담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2급과 1급 아동상담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보수교육 내용은 상담 및 심리치료기법에 대한 실제적 내용과 상담에 대한 이론적 측면의 이해, 그리고 상담사의 관리 감독을 위한 지도능력에 대한 것으로 한다.

IV. 논의 및 결론

아동상담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례관리의 관건이지만, 현재 아동상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나 부모들이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조차 없어 학회나 단체 등에서 각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록

<표 13> 등급별 아동상담사 보수교육

내용	1급 아동상담사	2급 아동상담사	3급 아동상담사
상담 및 심리치료기법	50시간/매 2년	100시간/매 2년	100시간/매년
상담이론	20시간/매 2년	20시간/매 2년	20시간/매년
상담사 지도능력	10시간/매 2년	10시간/매년	-

국가적 차원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공신력이 있는 학회나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조차 없이 각종의 기관에서는 마구잡이 형태로 아동상담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아 처해진 상황에 적합한 상담기법이나 치료기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아동상담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410개소에 이르지만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아동상담사에 의한 아동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의 수는 매우 적다(유재령·김광웅, 2008; 천혜숙, 2008). 또한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증설되고 있으나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아동과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보건복지부(2007)의 아동청소년관리과에서 발표한 피학대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의 제공율이 10.7%에 불과하다는 자료에 의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자료는 한명의 상담원이 담당해야 할 아동문제와 관련한 업무가 매우 과중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적 판단도 가능하게 한다.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도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주요 사업이 대부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상담 및 치료서비스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7년부터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

족상담, 부부상담 외에 아동·청소년상담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원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증가로 인한 아동상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보다 원활하게 아동문제를 전담하여 상담하고 치료해줄 수 있는 전문아동상담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격검정제도의 마련은 매우 필요하다. 이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003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함을 직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검정제도를 마련한 선례가 있으므로 아동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검정제도의 마련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비행이나 범죄의 발생에 대한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문제를 전담하여 상담하고 치료해줄 수 있는 아동상담사의 국가자격검정제도의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문제는 사후 치료적 접근보다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이다.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기는 청소년기와 비교할 때 자기보호능력은 취약하지만 발달적 탄력성이 뛰어나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 교육적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기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발달을 지원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아울러 가족해체와 다문화가정 등에서 발

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해서도 전문 아동상담사를 통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현대 사회의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아동상담이 필요하다. 현재 학회나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검정과정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은 아동상담사들은 주로 사설상담센터나 사회복지관 혹은 소아청소년정신과 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상담비용은 1회에 5~10만 원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알면서도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유도한다. 따라서 부모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의 문제를 발견한 즉시 적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동상담사의 국가자격검정제도를 통한 자격증의 부여와 이들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아동의 문제예방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아동상담과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아동상담을 위한 자격검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전문 아동상담사들을 해당 기관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아동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셋째, 아동상담사의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상담은 아동의 발달적인 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자가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민감하지 못한 타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깊이 있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전문기관은 규모에 따라 아동상

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률이 더 높다는 점과 11세 이하의 피학대아동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점,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전문적인 아동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아동의 발달과업이 청소년과 다르고 정서적 특성은 물론 주로 겪는 심리적 문제조차 청소년과 매우 상이하다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동상담사를 양성하여 배치할 수 있는 아동상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아동상담사의 양성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아동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문제로 인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위해 최적의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기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아동상담사의 국가자격검정제도의 마련을 통해 아동에게 적기에 적합한 문제해결을 도모해줄 수 있는 서비스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건전한 인재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 국가발전을 위하여 아동상담의 전문적인 영역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한다.

## 참 고 문 헌

김순혜(2005). **현대아동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영한(2009).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 박영신(2005). 국내에서의 발달심리사, 전문가 자격증 제도의 현황. 한국발달심리학회 2005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발달상담 및 치료교육의 현재와 미래, 42-47.
- 보건복지부(2007).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서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세계일보(2006. 8. 3). 초등학교생 4명 중 1명은 정서·행동 장애.
- 세계일보(2007. 10. 30). 엿선 조기치료 시스템 가동으로 32개월 만에 정상 되찾아. <http://www.segye.com/Articles/Issue/INQUIRY/Article.asp?aid=20071029004919&subctg1=&subctg2=&sid=4300024>에서 2010년 4월 30일 인출
- 세계일보(2009. 11. 1). 청소년 자살 원인 보니. <http://www.segye.com/Articles/Issue/INQUIRY/Article.asp?aid=20091101002187&subctg1=&subctg2=&sid=4000144>에서 2010년 4월 30일 인출.
- 세계일보(2009. 11. 1). ‘우울증 늪’에 쉽게 빠져...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http://www.segye.com/Articles/Issue/INQUIRY/Article.asp?aid=20091101002193&subctg1=&subctg2=&sid=4000144>에서 2010년 4월 30일 인출.
- 유재령·김광웅(2008).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실천행동 관련변인으로서 교육훈련배경. **아동학회지** 29(1), 133-153.
- 윤치연(2003). **발달장애의 이해**. 서울 : 형설출판사.
- 이현섭·김상윤·추정선·조선희(2001). **아동발달심리**. 서울 : 학지사.
- 정민정·이상희(2006). 우리나라 아동상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563-572.
- 조선일보(2010. 3 30). “인터넷 중독자들에게 ‘탈출구’ 만들어 줘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30/201003300224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30/2010033002249.html)에서 2010년 4월 30일 인출.
- 천혜숙(2008).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개방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승민(1999).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 분석 : 아동상담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8(3), 465-47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2009). Licensure requirements for professional counselors : What’s new for 2009. Alexandria, VA : Author. (<http://www.counseling.org/Counselors/LicensureAndCert.aspx>)
- 독일 청소년상담사 관련법 웹사이트 ([www.juris.de](http://www.juris.de))
- 한국아동학회 홈페이지. [www.childkorea.or.kr](http://www.childkorea.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 Association of North Carolina (<http://lpcanc.org>)
- National Board for Certified Counselor (<http://www.nbcc.org/certifications>)

2010년 2월 25일 투고, 2010년 5월 3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